

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308
------	------

2020. 04. 23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02월 05일, 김달호 의원 외 9명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02월 12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】

-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(2020.04.23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달호 의원)

1. 제안이유

감채기금의 조성 재원 중에서 “출연금” 을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“기금전출금” 으로 변경하여 용어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 쓰이는 용어 중 “출연금” 을 “기금전출금” 으로 변경함.

- 출 연 금 :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
- 기금전출금 :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

나. 제명 등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정비함(안 제7조).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감채기금의 조성재원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‘출연금’ 을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」(이하 “기금수립기준”)에 부합하도록 ‘기금전출금’ 으로 변경하고, 조례의 제명 등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

-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재원을 적립하여 부채규모를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, 「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2001년부터 운용되고 있음.
-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49억 8천 3백만원으로, 전년도 대비

3,810억 4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음.

-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, 기금의 수입 규모는 4,353억 5천 8백만원으로 ▶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8천 8백만원, ▶공공예금 이자수입 83억 4천 2백만원, ▶예치금 회수금 4,260억 2천 8백만원임.
- 발생 수입금은 ▶예수금 원리금 상환 189억 8천 8백만원, ▶차입금 상환 708억 3천 1백만원, ▶도시철도공채 원금 및 주택도시기금 원리금 상환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3,000억원, ▶시금고 예치 44억 8천 3백만원 등으로 각각 지출할 계획임.

<2020년 감채기금 운용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0 (A)	2019 (B)	증 감 (A-B)	비 고
수 입	435,358	1,248,062	△812,704	
전 입 금 (일 반 회 계)	988	621,650	△620,662	재투자금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(도시 철도과) 전입금
이 자 수 입	8,342	10,058	△1,716	공공예금 이자수입
예 치 금 회 수	426,028	616,354	△190,326	
지 출	435,358	1,248,062	△812,704	
예수금 원리금 상환 (이 자 포 함)	18,988	220,981	△201,993	재투자금 차입금 잔액 중 원금 (180억원), 이자(9억8천8 백만원) 상환
차 입 금 상 환 (이 자 포 함)	70,831	513,190	△442,359	모집공채 이자 상환 (19년 발행분)
기타회계 전출금	300,000	87,825	212,175	도시철도공채 원금 (3,000억원) 상환
예 치 금	44,983	426,016	△381,033	
일 반 운 영 비	555	50	505	2020년 모집공채 발행 수수료 및 사무관리비

다. 기금의 조성 등(안 제3조·제7조)

- 개정안은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명시된 서울시의 ‘출연금’ 을 ‘기금 전출금’ 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.
- 행정안전부의 기금수립기준에서는 기금의 수입과목을 전입금, 보조금, 차입금, 융자금회수(이자포함), 예탁금원금회수, 예치금회수, 예수금, 이자수입, 기타수입 등 9개로 명시하고 있음[참고자료].
- 현행 조례상의 ‘출연금’ 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금전적 이전지출을 의미함.
- 따라서 민간이나 법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세입·세출 외로 설치·운용하는 기금의 수입 과목으로는 적절치 않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함.
 - 행정안전부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2013년부터 기금수립기준을 개정해 종전의 “출연금” 을 “전입금” 으로 변경한 바 있음.
- 다만, 개정안의 ‘기금전출금’ 은 일반회계 등의 세출예산 과목이므로, 기금의 조성 측면에서 볼 때 수입항목인 ‘전입금’ 으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.

- ‘전출금’은 회계 또는 기금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을 말하며, ‘전출금’을 지원받는 기금 입장에서는 이를 수입 항목 중 ‘전입금’으로 계상¹⁾해야 함.
- 한편, 현행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조성 재원 항목 중 일부가 기금 수립기준의 수입과목과 부합하지 않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수정안요지

가. 수정이유

- 행정안전부의 「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부합하는 기금 수입과목으로 수정해 용어 사용 혼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나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- 기금 조성 재원 항목을 기금수립기준의 수입과목에 부합하도록 각각 수정함(안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).

1) 「2019 대한민국 재정」, 국회예산정책처(2019.3), 68면

- 기금수립기준의 수입과목에 명시된 항목 외에 ‘기금 조성을 위한 그 밖의 수입’을 별도의 호로 구분하여 기금 조성 재원 항목으로 규정함(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).

Ⅵ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08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04월 23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행정안전부의 「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부합하는 기금 수입과목으로 수정해 용어 사용 혼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기금 조성 재원 항목을 기금수립기준의 수입과목에 부합하도록 각각 수정함(안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).
- 기금수립기준의 수입과목에 명시된 항목 외에 ‘기금 조성을 위한 그 밖의 수입’을 별도의 호로 구분하여 기금 조성 재원 항목으로 규정함(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).

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특별회계의 기금전출금 단,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” 을 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. 단,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차입금” 을 “예수금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및 보조금

4. 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

안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일반회계 및 <u>특별회계의 출연금 단, 일반회계의 출연금</u>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% 이상으로 한다.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2.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</p> <p>3.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</p> <p>4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----- -----.</p> <p>1. 일반회계 및 <u>특별회계의 기금전출금 단,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<u>차입금</u></p> <p>3. <u>정부지원금 및 융자금</u></p> <p>4. <u>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</u> 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----- -----.</p> <p>1. 일반회계 및 <u>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. 단,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다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<u>예수금</u></p> <p>3. <u>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및 보조금</u></p> <p>4. <u>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</u></p> <p>5. <u>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</u></p>

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특별회계의 출연금 단, 일반회계의 출연금”을 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. 단,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차입금”을 “예수금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및 보조금
4. 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

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

제7조제1항 단서 중 “사무중”을 “사무 중”으로 하며, “포함)및”을 “포함) 및”으로 하고, “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으로 하며, “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”을 “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일반회계 및 <u>특별회계의 출연금 단, 일반회계의 출연금</u>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% 이상으로 한다.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2.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<u>차입금</u></p> <p>3. <u>정부지원금 및 융자금</u></p> <p>4. <u>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>제7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<u>사무중</u>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<u>포함</u>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<u>회계관계 공무원</u>을 <u>기금관리 공무원</u>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----- -----.</p> <p>1. 일반회계 및 <u>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. 단,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<u>예수금</u></p> <p>3. <u>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및 보조금</u></p> <p>4. <u>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</u></p> <p>5. <u>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</u></p> <p>제7조(회계공무원) ① ----- ----- -----, ----- <u>사무 중</u> ----- <u>포함</u>) 및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」----- <u>회계관계공무원</u>을 <u>기금관리공무원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